

#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15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6. 14  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가.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80,163천원으로서  
이중 12건에 619,885천원을 지출하였으며, 지출내역은

○동계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설치	47,745천원
○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비병력야식지원	10,000천원
○국민주택융자금전산화사업	5,000천원
○수해응급복구 장비임대	16,320천원
○수해복구 농기계부품지원	7,150천원
○퇴직수당부담금	269,078천원
○명예퇴직수당(6건)	264,592천원임.

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0조
-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

# 관계법령 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20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34조(예비비)

-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(예비비사용의 제한)

- 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 및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#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조서

(단위:천원)

구분			사업명	지출결정액	지출원인 행위액	지출액	이월 액	불용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사유
과목									지출결정일자	지출일자	
세항	세세항	목									
합계				619,885	609,620	609,620	-	10,265			
체육진흥	경상적경비	201	동계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설치	47,745	42,529	42,529		5,216	1. 14	2. 5	동계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추가설치
체육진흥	경상적경비	201	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비병력 야식비	10,000	6,811	6,811		3,189	1. 23	2. 1	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찰경비병력 야식 비지원
인사관리	인건비	101-02	명예퇴직수당	23,406	23,406	23,406		-	4. 13	4. 14	명예퇴직수당 부족 분 지급
인사관리	인건비	101-02	명예퇴직수당	7,326	7,326	7,326		-	7. 6	7. 13	명예퇴직수당 부족 분 지급
주택관리	자체사업	207-02	국민주택융자금 전 산화사업	5,000	3,600	3,600		1,400	7. 23	12.27	국민주택융자금 전 산화사업을 위한 프 로그램구입

구 분			사 업 명	지 결 정 액	지출원인 행 위 액	지출액	이월 액	불용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사유
과 목									지출결 정일자	지 출 일 자	
세 항	세세항	목									
인사관리	인건비	101-02	명예퇴직수당	123,704	123,704	123,704	-	8. 7	8.14	명예퇴직수당 부족 분 지급	
재해대책	자체사업	401-01	수해응급복구	16,320	16,320	16,320	-	9.15	9.27	수해응급복구 장비 임대	
농산관리	자체사업	402-01	수해복구 농기계 부 품지원	7,150	6,690	6,690	460	10.8	12.21	도복벼 복구를 위한 농기계부품 구입지 원	
인사관리	인건비	101-02	명예퇴직수당	38,299	38,299	38,299	-	10.15	10.28	명예퇴직수당 부족 분 지급	
서무관리	경상적경비	304-01	퇴직수당 부담금	269,078	269,078	269,078	-	11.29	11.3	퇴직수당 부담금	
인사관리	인건비	101-02	명예퇴직수당	47,506	47,506	47,506	-	12. 4	12. 7	명예퇴직수당 부족 분 지급	
인사관리	인건비	101-02	명예퇴직수당	24,351	24,351	24,351	-	12.17	12.28	명예퇴직수당 부족 분 지급	